#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7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 의 자: 장경태·김남국·전용기

윤준병 • 이규민 • 이용빈

황운하 · 민형배 · 양향자

유정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청년층의 9.0%,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의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하였고, 40세~49세는 58. 6%, 50~59세는 63.1%, 60~69세는 68.2%, 70세 이상은 66.0%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세~49세는 52.9%, 50~59세는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은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임.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 청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득 제한 항목 삭제를 통해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통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신혼부부"를 "무주택 청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무주택 청년층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가구 중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2. 신혼부부. 이 경우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인 사람
  - 나. 주택 취득일 혹은 주택 임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 인 사람
- 3.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4.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 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 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 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 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 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개 정 안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무주택 청년층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는 사람·가구 중 제4호의 요 건을 갖춘 자가 거주할 목적으 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2. 신혼부부. 이 경우 "신혼부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 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인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 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 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 ⑤ (생략)

사람

- 나. 주택 취득일 혹은 주택임대일부터 3개월 이내에혼인할 예정인 사람
- 3.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4.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